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4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0,403,020원, 지방교육세 4,756,160원, 농어촌특별세 2,662,2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0,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1)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는 취득세 66,845,350원(= 본세 57,821,39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9,023,96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23. [redacted]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등(이하 '관련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7. 11. 23.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농업회사법인인 원고는 2017. 11. 23.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403,020원을 면제받았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받았다(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1. 27. 원고에게 '원고가 경락 취득 후 감면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면 유예기간이 도래(2018. 11. 23.)되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1년 이내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내(2018. 12. 24.)에 구청에 방문하시어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8. 12. 24.까지 취득세 50,403,020원, 지방교육세 4,756,160원, 농어촌특별세 2,662,210원, 합계 57,821,39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서를 발급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마. 이에 피고는 2019. 1.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57,821,39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50,320원, 합계 57,971,710원을 2019. 1.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부동산인도명령 등 소송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0. 3. 5.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원고)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취득 이전에 이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신고대상 및 부과가 적법 타당하므로 취득세액 등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함.

사. 원고는 2020. 4.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받았으나, 그 집행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다른 사람 소유의 가건물 및 유체동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가건물 및 유체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2. 9.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는바, 원고가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납세고지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세액신고에 따라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참조). 따라서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해당하고(구 지방세법 제18조, 제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신고납부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 중 취득세 등 부분의 법적 성격은 징수처분에 해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의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부분에 대해서도 납세의무의 존부를 다투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납세고지 중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납세고지가 징수처분과 부과처분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위법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납세고지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 당초의 신고행위에 당연 무효의 하자가 있어 그 하자가 승계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징수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취득세 등 부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 전부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호는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2,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영농조합법인과 그 대표이사인 D를 상대로 [redacted]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7. 12. 13. 그 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18. 3. 14. 11:50 이 사건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redacted]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그 집행이 불능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부동산인도불능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집행불능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 - 집행 불능 사유 -
> 채권자의 연기 신청
> (중간 생략)
> ※ 제3자 G이 본 집행관실 사건번호 H 및 I로 매수한 유체동산이 현장에 소재함.

③ G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3번 기재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및 그 안에 있는 유체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2018. 5. 30. G을 상대로 [redacted]지방법원 2018가합23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redacted]지방법원은 2019. 12. 9.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8. 1. 인도하였음을 확인하고, 만약 아직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문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도하며, G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은 2019. 8. 1.자로 이 사건 가건물 및 그 안에 있는 유체동산에 관한 일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는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G을 상대로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8. 6. 5. [redacted]지방법원 2018카단10806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8. 6. 11.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아 2018. 6. 20. 그에 따른 가처분집행을 마쳤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영농조합법인과 그 대표이사인 D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고, G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관련 경매사건의 경매사건정보에는 '제시외 컨테이너하우스 4동은 매각에서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가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시점에 그 지상에 이 사건 가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가건물 및 유체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작성된 부동산인도불능조서에는 집행불능사유가 '채권자의 연기 신청'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기록상 이 사건 가건물 및 유체동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전체 면적은 13,543.6㎡인 반면에 이 사건 가건물의 전체 면적은 약 60.3㎡ 정도로서 그 비중은 약 0.4%에 불과한 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가건물이 위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의 취득한 시점부터 직접 영농에 사용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별지1

부동산 목록

1. [redacted]시 [redacted]구 J 답 7,128.7㎡ 및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단층 동,식물관련시설(고정식 유리온실) 6,624㎡

2. [redacted]시 [redacted]구 K, L, M[2)]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단층 가설건축물(농업용고정식온실) 5,352㎡

3. [redacted]시 [redacted]구 N 답 1,844.4㎡

4. [redacted]시 [redacted]구 O 답 4,570.5㎡. 끝.

2) 위 각 지번은 등기부에 기재된 것으로, 위 각 지번의 토지는 [redacted]시 덕진구 N 토지, O 토지와 동일한 부동산인데, 경지정리로 인한 환지 및 합병을 통하여 위와 같이 현황이 달리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별지2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5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끝.